

제5부 선거기사심의의 관련 법규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선거법 규정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 선거기사심의기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선거법 규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답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

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

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입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나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

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나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 방송·신문·통

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①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

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등

나.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부 칙 < 2000. 2. >

제2조(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이 법 시행후 20일 이내에 설치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정 : 2000. 2. 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등)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제규칙을 준용한다.

제 2 장 구성 및 운영

제3조(설치등) ①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때부터 20일)까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하 “추천단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하 “추천정당”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③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언론인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④언론중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함에 있어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⑤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추천단체와 추천정당이 추천한 자의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의위원을 위촉한다.

제4조(임기등)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당해 선거와 관련 설치되는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

②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전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를 재위촉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의위원장등) ①심의위원회에 정·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자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통괄한다.

③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직무) ①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규정된 선거기사 심의
2. 선거법 제8조의3 제4항에 규정된 선거기사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정요구사항 심의
3. 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에 규정된 반론보도 청구의 심의

②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 제4항에 의거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기사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하여 공표한다.

제7조(회의등) ①심의위원회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심의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의결정족수) ①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의 대우)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심의 및 시정

제10조(심의) ①선거기사의 심의기준은 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및 심의위원회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②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 심의에 관한 기준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안건)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선거기사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의결) ①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의 또는 경고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①심의위원회가 제12조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진술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정기간행물에 대한 제12조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선거법 및 본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제15조(시정요구사항) ①후보자는 선거법 제8조의 3제4항에 의하여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부터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선거기사 전문과 시정요구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장은 후보자로부터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대한 시정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가 제2항의 심의를 한 결과 불공정한 선거기사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에서 정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시정요구사항의 심의절차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4 장 반론보도청구

제16조(반론보도청구) ①후보자 및 언론사가 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그 취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면(이하 "회부서"라 한다)으로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반론보도청구 회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③심의위원회장은 회부서를 접수하는 즉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반론보도청구의 양측 당사자 등의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는 구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심의·의결) ①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를 회부받았을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함에 있어서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언론사 등 양측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16조 제3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문은 참석 심의위원들이 서명날인한다.

⑤선거기사관련 반론보도청구사건 심의절차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언론중재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특례절차)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

다.

제 5 장 보 칙

제19조(사무처리등) 심의위원회의 의사, 관리, 홍보 등의 사무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제20조(예산)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해산) 심의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필요한 업무를 완료하고 해산한다.

부 칙

①이 규칙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정기간행물의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사건심의 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장 총칙

제1조(공정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2조(형평성) 언론사는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객관성) ① 언론사는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여야 한다.

② 언론사는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4조(공익성) 언론사는 언론의 공적 사명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정치적 중립) 언론사는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2장 기사

제6조(사실보도) ① 언론사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언론사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발언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언론사는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사실과 의견의 구별) 언론사는 선거기사에서 사실보도와 의견을 명백히 구별하여야 한다.

제8조(여론조사 보도) ① 언론사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언론사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

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③ 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한계 이내인 경우 단정적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설기사는 그 조사의 전체 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이용하여 보도할 경우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인용보도) ①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 내용을 인용할 때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② 언론사는 후보자의 발언이나 정당발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피하여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제10조(인터뷰 기사) ①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견해나 반응을 묻는 기사는 상반된 견해를 가능한 한 균형있게 보도하여야 한다.

② 인터뷰 기사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편집,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독자투고) 언론사는 독자투고란에 선거에 관련된 독자의 의견을 게재할 경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조(특집기획기사) 언론사는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기사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대담·토론기사)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간의 대담, 토론기사를 다룰 때에는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표제 및 사진

제14조(기사제목) 언론사는 기사제목이 기사내용과 달리 축소·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5조(사진 게재) ① 언론사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게재시 가능한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 언론사는 사진게재에 있어 어떠한 변형이나 재구성을 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 사진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언론사는 선거유세장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참가 인원이나 내용을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광고

제16조(의견광고) 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

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①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언론사는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권리구제

제18조(정정보도청구권) 언론사는 선거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9조(반론보도청구권) 언론사는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이 명백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기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합당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